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특화수단)

- 2024년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사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소기업 육성 및 설립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강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기관에서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한양대학교 에리카 강소연구개발특구지원단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업의 실수요에 부합하는 공공기술의 사업화 수요를 발굴·분석하고, 기술발굴·이전(출자), 컨설팅 등 연구소기업 설립 전후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공기술사업화 촉진

□ 사업내용

- 연구소기업 설립 희망 기업 탐색 및 경기 안산 강소특구 내외 수요기반 기술 발굴·매칭, 공백기술 연계 등 설립 전후 전주기적 지원

* 사업 선정 시 정량지표 관련 세부내용은 한양대 에리카 강소특구지원단과 재협의 후 확정

- 유망기술 발굴 및 매칭 : 특화분야별 유망기술 발굴 및 연구소기업 출자 가능 기술에 대한 분석, 연구소기업 설립 기획지원 등

* R&BD 연계형 기술찾기 사업 등 경기 안산 강소특구 他사업에서 발굴된 연구소기업 설립 수요에 대한 지원 포함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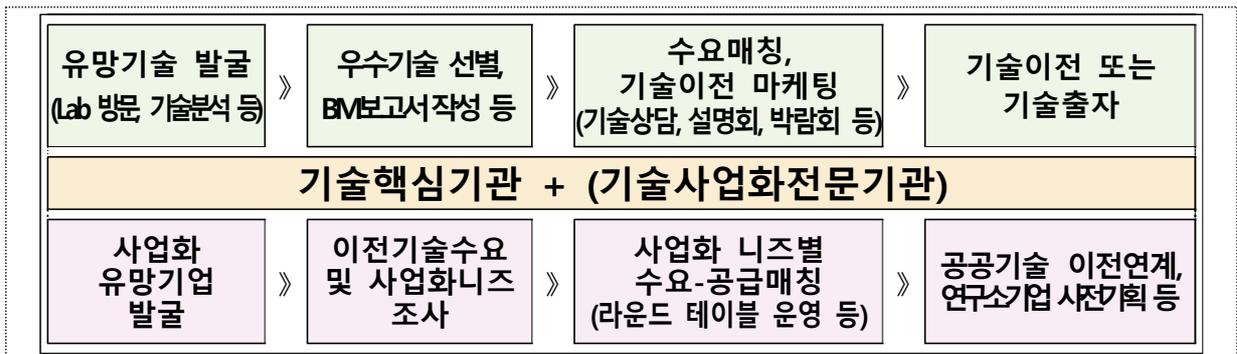
- (지원규모) 연간 2억원 × 1개 수행(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 선정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5. 03. 09 까지
- (신청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한 기업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된 기업

※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은 주관기관 사업비 내에서 용역 형태로 사업비 집행 가능

* 민간사업화기관 및 민간사업화기관(신청자격 조건 동일)

○ (지원내용)

<<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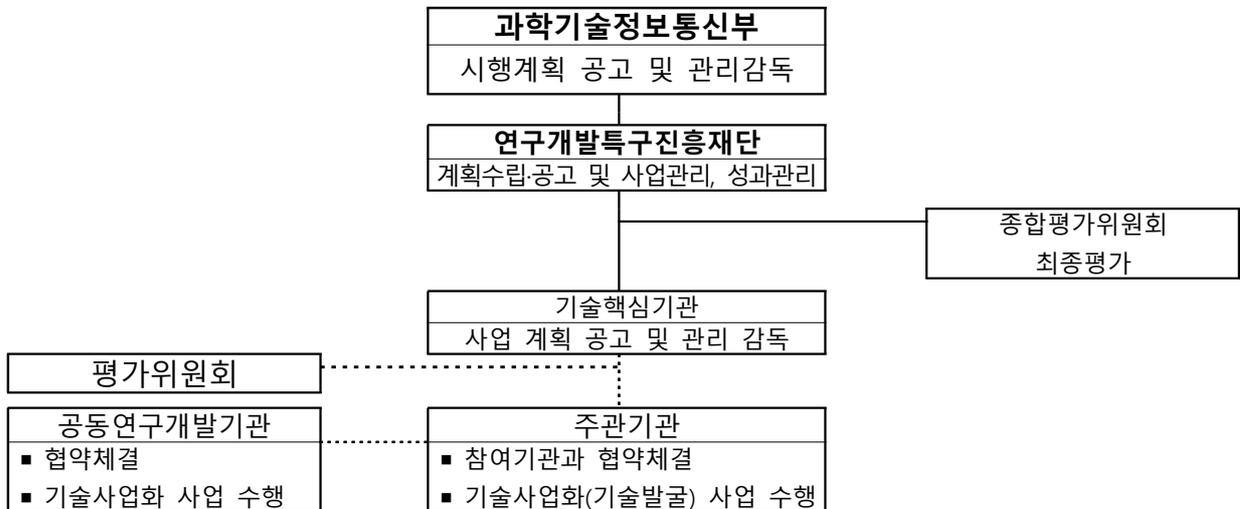
※ 상기 연구소기업 발굴기획 절차는 수행과정에서 변동 가능

- 특구재단, 기술핵심기관 및 수행기관을 통해 발굴된 유망기술의 연계. 확산을 위한 강소특구 내외 기업 수요 발굴부터 기술이전.출자까지 기술사업화 제반 활동 지원
- 공공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수요 조사, 기술 DB 구축, 기술 마케팅, 연구소기업 수요 발굴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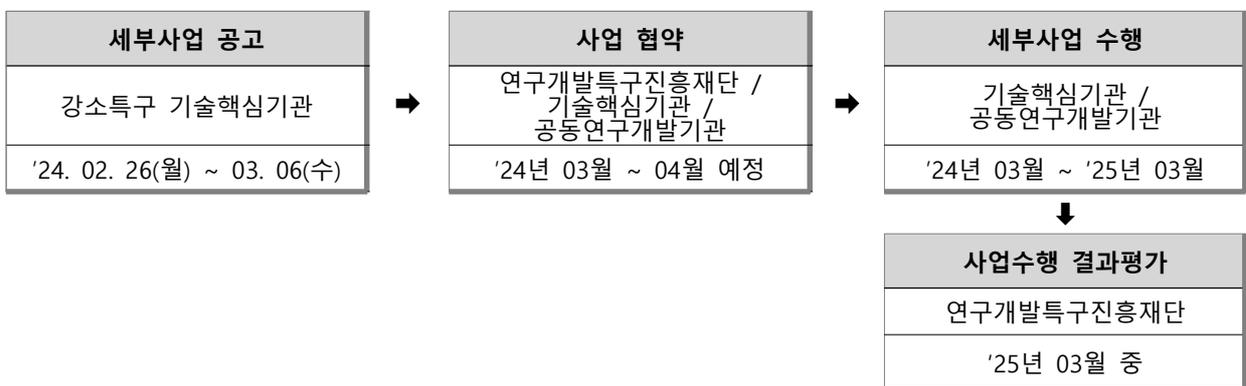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지원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참여기관 선정평가는 기술핵심기관에서 진행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내부역량, 추진전략 및 사업실적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50
	•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정도	
	• 수행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 실적**	
	• 전년도 同사업 수행실적	
추진일정, 예산운영 및 성공가능성	•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활용의 적정성	30
	• 업무분장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기술핵심기관 연계 운영 방안 포함)**	
계		100

* 수행기관의 특구 내 공공기술을 안산시 기업으로 이전 및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 중점평가사항 :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 실적 및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기술핵심기관 연계 운영 방안 포함)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2) 신청 자격 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선정평가 방식

- 지역혁신주체와 특구 내 기업 관계자 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 진행

5.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안내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경기 안산 강소특구 홈페이지(<https://ericainnotown.hanyang.ac.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온라인 E-mail 접수*

* 온라인 접수 : 한양대 ERICA 강소특구지원단 박태영 khsty19@hanyang.ac.kr

○ 공고(접수)기간 : '24. 02. 26.(월) ~ '24. 03. 06.(수), 15:00까지

□ 세부추진 일정안내

구분	추진일정	비 고
사업공고	'24. 02. 26(월) ~ '24. 03. 06(수) 15:00까지	-
제안서 접수	'24. 02. 28(목) ~ '24. 03. 06(수) 15:00까지	-
1차 적정성 검토	'24. 03. 06(수) 비대면 진행	실적 검증 및 적정성 검토* * 6. 신청자격 검토사항 세부내역 검토
2차 선정평가	'24. 03. 07(목) 예정	서면 평가 진행 (발표평가 없음)
선정평가 결과 안내	'24. 03. 07(목) ~ '24. 03. 08(금) 예정	선정기업대상 안내

□ 제출자료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E-mail 제출

구분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제출 자료	사업 참여 의향서	전자파일 (PDF) 제출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 참여기관있는 경우 작성 시 포함하여 제출
	신청자격 확인서(등록증)		-	주관기관 제출 * 참여기관있는 경우 작성 시 포함하여 제출
	사전검토 자료 (2021, 2022, 2023년 재무제표 포함)		붙임 1.	주관기관 제출 * 참여기관있는 경우 작성 시 포함하여 제출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전자파일 (PPT, PDF) 제출	자율	주관기관 제출

□ 문의처

- 담당부서 : 한양대 ERICA 강소특구지원단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 고
곽태영	031-400-4983	khsty19@hanyang.ac.kr	사업신청 관련문의

6. 신청자격 검토사항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파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파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 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 사전지원제외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p>※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사후관리

구분	사후관리
검토 기준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고 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

- 사업비 : 200,000,000원
- 세부사업명 : 수요기반형 우수기술발굴·매칭 지원
- 주요지표

구분	성과지표명	성과목표	비 고
핵심 지표	연구소기업(개)	6	* 첨단기술기업 포함
	기술이전 및 출자(건)	15	핵심지표 "사업화 수요발굴(건)" 연계 기술이전 성과 창출 건수
	사업화 수요발굴(건)	30	기술핵심기관 공공기술 중심으로 연계된 수요기업의 사업화(기술) 진성수요 발굴 건수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건)	100	경기 안산 특화분야 연계 우수기술 발굴(SMK 제작) 및 기술 마케팅
	BM 보고서 작성(건)	6	BM 확정형 6건 (연구소기업 설립 건)
자율지표	기술협의체 및 기술설명회 증 운영(건)	3	경기 안산 특화분야 중심
	특구 간 연계 협력을 위한 수요 발굴(건)	2	기술이전사업화 R&BD 수요발굴 포함
	차별화 전략 제시 1건 (연계 협력 방안)	1	-
	첨단기술기업 후보 발굴	5	첨단기술기업 후보
	특화개별사업 연계 협력	5	특화개별사업 사전 컨설팅 등 활동 건수

※ 주요 지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산 배분 기준

구분	세부사항	비 고
편성 사업비	인건비, 연구활동비 편성 가능	인건비 최대 50%까지 편성 가능

* 연구수당 및 간접비 산정 불가